

민간조사제도가 민간경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Influence

Dong Woon Son, Sung Gu Jo**, Dong Je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Woon University, 730 Gangdong-ro, Sandong-myeon, Gumi, Korea

Abstract

Korea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ms large scale market which has around 150,000 workers and over 4,000 companies but inadequate treatment and environment for private security guard still don't attain qualitative growth than quantitative growth. Private investigation which has grown a kind of private security has began to come from foreign country to Korea since Korea joined OECD and thereabout legislation was tried in assembly to make a legal basis of private investigation but until now it hasn't enacted so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 conducts illegality like a contract, tail and tap for high profits. Past march growing new job plan was issued in cabinet meeting s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on Jae 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ng Young Geun's 「Private Investigation Act」 are getting power. This study intended for examining effect of adopting private investigation on private security industry's prospect in exploratory. Results of study show 'very prospective business'(39.7%), 'prospective business'(25.7%), 'average'(12.1%), not prospective business(14.3%), not very prospective business(7.9%) so usually respondents think adopting of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make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prospective business.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세계행정학술회의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4-479-1358. Fax. +82-54-479-1359 E-mail. skcho@ikw.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y. 2, 2014 / Revised: Aug. 6, 2014 / Accepted: Aug. 14, 2014

Plus respondents show that 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limitation of public power, growing of crime, growing of large security company, expansion of customer, privatization policy and application of society at large and non-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qualification system, illegal operation, specified user class and supply of capable person.

Key words: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industry, institution introduction, Private Security 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50년간의 성장을 통해 현재 약15만 명의 종사자와 4,000여개의 업체가 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양적성장애 비해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성장하여 민간조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틈새로 민간조사업체는 고수익을 위해 미행, 도청, 살인청부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사립탐정을 새로운 신직업 육성계획으로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이 입법화 동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을 유망한 사업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범주로 공권력의 한계, 범죄의 증가,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수요자의 확대, 민영화 정책, 사회전반에 적용 등 이었으며, 유망하지 않은 사업의 범주로는 자격제도, 불법적 운영, 특정된 수요층, 인재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민간조사, 민간경비, 민간경비 산업, 제도도입, 경비업법.

1. 서론

우리나라의 현대적 민간경비 시스템은 1950년대 미 군납 형태의 제한적 용역경비로 출발하여 최근 2013년 말 민간경비업체 수 약 4천개, 직원 수 15만 명을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으며(조성구·이주락, 2011), 이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구 외, 2013).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는 외국의 다국적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1999년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를 최초 추진한 이래 9번의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국내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등 법률상의 충돌과 주무관청을 둘러싼 이익단체의 갈등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연되어져 왔다.

이렇게 입법화 지연으로 현재 국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피해 규모가 알려진 바 있으며, 이러한 국민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행, 도청 그리고 청부살인 등이며 사례비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다. 또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성구·김동제, 2013).

최근 지난 3월 박근혜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사립탐정’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표하여 외국에서 성공한 직업군을 국내에서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이 입법화에 힘을 얻고 있다.

민간조사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민간경비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비하여 민간조사는 고수익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민간경비 산업 전체를 재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

Bilek & Lejins(1977)에 따르면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의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근거인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을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가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다.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는 매년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말기준 전국의 경비업체는 4,077개, 배치된 경비원은 경비원수는 2009년(146,805명), 2010년(142,363명), 2011년(146,286명), 2012년(150,030명), 2013년(151,7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업무별 업체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1〉 민간경비업무별 업체수

업종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업종 계	업체 수
계	3,971	42	525	145	139	4,822	4,077

※ 자료: 사이버경찰청(2014).

위의 표와 같이 국내의 민간경비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경비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호송경비업 순으로 나타났다.

2. 민간조사

조성구(2012)는 민간조사의 정의를 영어의 'Private Investigation'을 번역한 용어로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이에 앞서 손상철(2011)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고, 정일석(2008)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 강영숙(2006)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제공하는 업무, 황정익 외(2005)은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편 황정익 외(2005)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민간조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정된 1911년 「신용고지업 취체규칙」이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어 오다가 1961년 「홍신업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신용고지업도 홍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홍신소는 1960년대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켰다고 하였다. 이후 1970년대 이후에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일을 주로 하였으며, 1977년 「홍신업단속법」이 폐지되면서 「신용조사업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1995년 「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되고 현재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민간조사 연구는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의 입법화 시도 이래 2000년 중후반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연구주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모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와 같은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민간경비 시장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수행되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연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이상원(2008)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
정일석(2008)	민간경비시장의 영역 확장을 위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안영규(2010)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민간조사업의 정의를 명문화하여 타 법률과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고 주장.
김동기(2011)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 방안으로 「경비업법」을 개정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논의.
조성구·김동재·손동운 (2014b)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철저한 현장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III. 연구방법

1.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Exploratory)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보안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이 연구는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K보안업체의 지사에 해당하는 2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470명을 표집 하였다¹⁾. 다음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 이 연구의 대상인 K경비업체는 사원(계약직) 867명, 사원 734명, 대리 319명, 과장 383명, 차장 86명, 부장 37명, 상무보 이상의 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조사대상

구분		사례 수(N)	백분율(%)
성별	남성	425	90.4
	여성	45	9.5
연령	20-24세	48	10.2
	25-29세	155	32.9
	30-34세	131	27.8
	35-39세	74	15.7
	40-44세	28	5.9
	45-49세	20	4.2
	50세이상	14	2.9
경력	1-4년	95	20.2
	5-9년	213	45.3
	10-14년	130	27.6
	15-19년	17	3.6
	20년이상	15	3.1
학력	고졸	168	35.7
	전문학사	93	19.7
	학사	182	38.7
	석사	23	4.8
	박사	4	0.8
직위	사원	325	69.1
	대리	51	10.8
	과장	49	10.4
	차장	29	6.1
	부장	10	2.1
	상무보이상	6	1.2
근무지역	대도시	256	54.4
	중소도시	120	25.5
	소도시	55	11.7
	농어촌	39	8.2
전체		470	100.0

3. 연구기간

이 연구의 기간은 2013년 3월 말부터 시작하여 2014년 2월초까지 약 1년간 진행되었다. 김구(2008)에 의하면 연구의 기간은 현지상황의 특성으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연구현황의 복잡성,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공간적 분포, 자료수집대상의 참여 동기, 자료수집대상의 자료제공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김구, 2008).

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민간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민간조사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조사대상의 기준과 비수량 자료의 분석 기간을 중심으로 연구의 기간이 결정되었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조사 방법 중 E-Mail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구(2008)에 의한 인터넷조사의 장점은 ①비용의 저렴성 ②소요기간의 단축 ③표본추출의 용이 ④상호 의사소통의 원활함 ⑤전문가 및 특정집단의 조사 가능 ⑥설문응답의 빠른 회수 및 코딩 ⑦24시간 설문 가능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질문지는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문항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Multiple Response Frequencies)하였다. 또한 선택 문항에 따라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을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나타난 자료는 QSR NVivo 8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드 수 10이하, 3% 미만을 극단치(Outlier)로 설정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회과학의 주된 연구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조사 방법 중 E-Mail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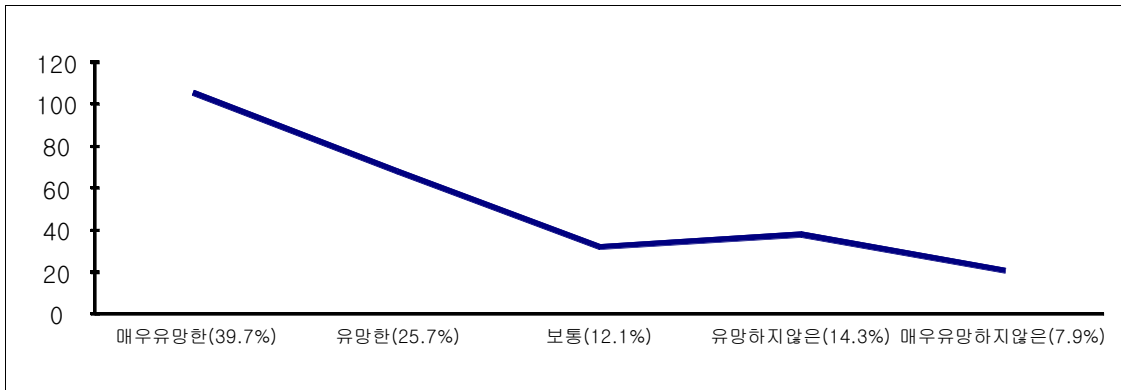
다음은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을 1차적으로 묻고, 그에 따른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 4>는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의 일부이다.

<표 4> 질문지

1.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유망한 사업	②유망한 사업	③보통	④유망하지 않은 사업	⑤매우 유망하지 않은 사업
2.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을 ①유망한 사업, 혹은 ②유망하지 않은 사업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유망한 사업 ☞				
②유망하지 않은 사업 ☞				

위와 같은 질문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민간경비 산업이 받을 영향은 ‘매우 유망한 사업’(49.3%)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다음 <표 5>는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에 대한 결과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빈도분석



위의 <표 5>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받는 영향은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이었다. 다음 <표 6>은 위의 <표 5>에서 나타난 폐쇄형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개방형질문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와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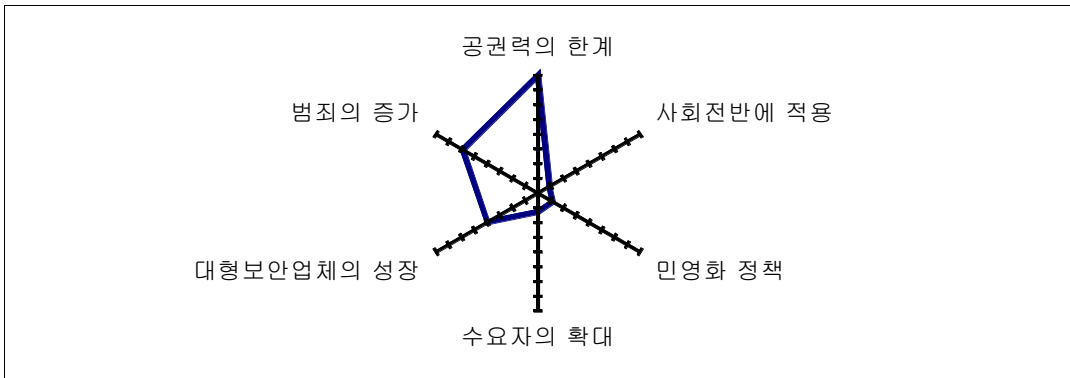
<표 6> 개념범주화

범주화		코딩수(N)	빈도(%)
상위범주	하위범주		
긍정적 전망	공권력의 한계	133	37.7
	범죄의 증가	98	27.8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66	18.7
	수요자의 확대	21	5.9
	민영화 정책	19	5.3
	사회전반에 적용	15	4.2
부정적 전망	자격제도	59	41.5
	불법적 운영	41	28.8
	특정된 수요층	25	17.6
	인재공급	17	11.9

1. 유망한 사업

비수량 분석결과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받는 영향은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7>은 ‘유망한 사업’에 대한 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유망한 사업



위의 <표 7>과 같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이 받을 영향으로 보는 전망으로 ‘공권력의 한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방형 질문을 NVivo 8로 범주화한 하위노드이다.

1) 공권력의 한계

외국에서도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이 성장하였고 국내에서도 경찰력의 한계에 따라 민간조사 영역이 예전에 비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2013. 11. 1. KYL. 女).

2) 범죄의 증가

기본적으로 요즘 알 수 없는 범죄 피해의 증가로 ○○정보, ○○기획, ○○심부름, ○○컨설팅과 같은 흥신소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의뢰하는 분위기이다(2013. 11. 3. MJJ. 男).

3)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민간경비 산업이라면 삼성에스원이나 ADT캡스같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들 기업은 기존의 인력경비에서 수요에 따른 영역확장으로 정보보안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법이 통과되면 민간조사업무도 주요 사업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2013. 10. 16. KSM. 男).

4) 수요자의 확대

민간조사업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조사에 대한 사업은 활성화는 이들업체의 난립이

커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여진다(2013. 11. 3. LSY. 男).

5) 민영화 정책

과거에 비해 모든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되고 있고 공적자금이 축소되고 있다 민간조사업도 그러한 맥락인 것 같다(2013. 9. 6. KMG. 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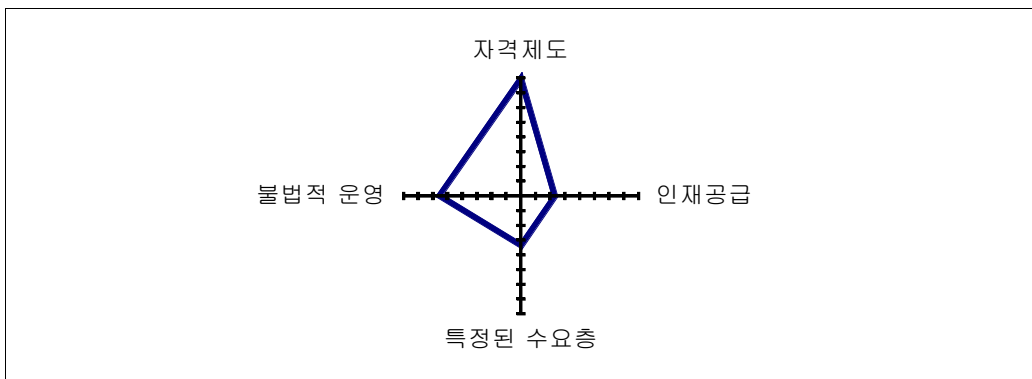
6) 사회전반에 적용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주부, 회사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민간조사업체에 의뢰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그 수요는 늘어나 성공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2013. 10. 1. KTM. 男).

2. 유망하지 않은 사업

비수량 분석결과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이 받을 영향은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은 ‘유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유망하지 않은 사업



위의 <표 8>과 같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민간경비 산업이 받을 영향으로 보는 전망으로 ‘자격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방형 질문을 NVivo 8로 범주화한 하위노드이다.

1) 자격제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민간조사 관련 법령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이 있다고 생각한다(2013. 9. 15. LSH. 男).

2) 불법적 운영

각종 행정시스템과 법규가 미흡하여 불법적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2013. 11. 11. KRE. 女).

3) 특정된 수요층

민간조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부유층에서만 이용하는 특정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어 국가 전반에 걸친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2013. 11. 9. NSB. 男).

4) 인재공급

우수 인력의 유입이 미흡하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수한 인력이 민간조사업에서 종사하길 원치 않을 것 같다(2013. 11. 15. GHL. 女).

V. 논의 및 제언

우리의 현대적 민간경비는 1980년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계기로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민간경비가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민간경비 산업은 양적증대에만 치우친 결과 그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성장 둔화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다(최정택, 2009).

조성구 외(2014b)에 따르면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치안인식 증대와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확대에 따른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특히 법정증언 및 증거, 미아·가출인·실종자 파악, 경제범죄 그리고 경찰의 미제사건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9개의 법안이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안되지 못해 불법 민간조사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행, 도청 그리고 청부살인 등이 주요 피해 사례이며 사례비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지만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하였다(조성구·김동제, 2013).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있는 치안환경 속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음성화 되어 있는 민간조사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입법화에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중 하나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민간경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 전부개정안」과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국내의 대형민간경비업체도 외국의 크롤(Kroll), 핑커튼(Pinkerton), 힐앤어쏘시에이즈(H&A)와 같은 다국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반면 국민의 사생활침해의 수준이나 정보유출의 빈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민간조사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흉악해지는 범죄의 증가에 따라 경찰의 한계영역을 대신하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고 오늘날 국내 치안수요는 더 이상 민간조사제도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입법화의 밑거름에 이바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조성구 외, 2014a), 국민의 권리실현, 피해구제 등의 입장과 침해 될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인권 등 양자의 이익을 고려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조성제, 2013).

참고문헌

- 강영숙. 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구. 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엔엠북스
- 김동기. 2011.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상철. 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31-162.
- 조성구. 2012. 한국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구, 김동제. 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15(4): 181-201.
- 조성구, 김동제, 손동운. 2014a.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경비업법 개정의 실효적 논의. 한국경찰연구. 13(1): 169-192.
- 조성구, 김태민, 김동제. 2013.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 한국치안행정학회. 10(3): 141-162.
- 조성구, 박주상, 김동제. 2014b.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의 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0(3): 25-39.
- 조성구, 이주락. 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81-205.
- 조성제. 2013. 민간조사업법 제정과 조사대상자의 인권. 한국경찰학회보. 39: 147-177.
- 정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택. 2009. 민간경호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호학회지. 18: 143-167.
- 안영규. 2010.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일본 탐정업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 학회보. 15: 73-107.
- 이상원. 2008.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35-253.
- 황정익, 김윤철, 백창현. 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Bilek, Arthur J. and Peter P. Lejins. 197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

손동운: 경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호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2014). 육군헌병대장으로 근무하며 해외파병경호임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통신회사의 특수경비 분야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가안보와 민간조사이며 최근 연구로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경비업법 개정의 실효적 논의(2014)”, “대형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의 민간조사제도의 이해 수준 연구(2014)”,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2014)” 등이 있다(mpsdw@naver.com).

조성규: 경기대학교에서 경호안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호와 민간조사이며, 경호학(2013)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2011)”,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2011)”,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2012)”,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2013)”,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2013)” 등이 있다(skcho@ikw.ac.kr).

김동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호와 무도이며, 경호학(2013), 실천무도학(2012), 탐정학(2011)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영향(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2013)”, “국내 민간조사 시장의 전문성 증진 방안(2013)”,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 설정 방향(2014)” 등이 있다(djkim@ikw.ac.kr).